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7. 7. 10.

공무제무원회의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6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97. 7.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 기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받던 가산금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5,260호 '97. 1. 24.) 개정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과거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의 5할을 보수에 인정해주므로 이종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수당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방범원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규정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24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와 관련한 별표2의 제2호 나목1의 2규정에 의하여 과거 자율방범 경력년수의 5할을 호봉에 재획정 하도록 개정되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받던 근속가산금은 이종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방범원의 근속가산금 지급은 1992. 10. 22.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시달시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92. 12. 31 동 조례

개정시 제3조제2항 규정을 신설하여 92.11.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경력이 합산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원에게 자율 방법 경력 근속가산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성환 위원) : 서울시 25개구중 유일하게 우리구에서 방법원에 대한 부적정하게 지급한 방법수당을 최초로 발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를 발견하기 이전 이증지급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금년 1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이 개정되므로 방법원에 대한 자율방법 근무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주는 호봉책정을 5 ~ 6월중에 정리하였고, 이증지급한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이증지급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잘못된 사항을 뒤늦게 발견, 예산이 낭비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방법원에 대한 수당 이증지급분은 별도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겠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만일 방법수당 지급에 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시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가 따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해 지급된 2 ~ 3개월분의 방법수당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회수한다는 대원칙 아래 내무부나 서울시의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본 사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조속히 받아 처리바람.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알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일자 : 1997.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받던 가산금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5,260호 '97.1.24) 개정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과거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의 5할을 보수에 인정 해주므로서 이중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수당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개정골자

- 방범원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규정을 삭제 함

3.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5,260호 '97.1.24)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및 기타 참고사항

- 예산조치필요성 여부 : 필요없음
- 1997년도 제46회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997. 6. — 안건번호 제 호 —)

첨부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방법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방법수당)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방법수당) (현행과같음)</p> <p>< 삭제 ></p>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제5절 급여

<별표 3>

방법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자 율 방 범 원 경 력	가 산 지 급 액	비 고
1년이상 2년미만	월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	월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	월 24,000원	
4년이상 5년미만	월 32,000원	
5년이상 6년미만	월 38,000원	
6년이상 7년미만	월 44,000원	
7년이상 8년미만	월 50,000원	
8년이상 9년미만	월 56,000원	
9년이상 10년미만	월 62,000원	
10년이상 11년미만	월 66,000원	
11년이상 12년미만	월 70,000원	
12년이상 13년미만	월 74,000원	
13년이상 14년미만	월 78,000원	
14년이상 15년미만	월 82,000원	
15년이상 16년미만	월 84,000원	
16년이상 17년미만	월 86,000원	
17년이상 18년미만	월 88,000원	
18년이상 19년미만	월 90,000원	
19년이상 20년미만	월 92,000원	
20년이상 21년미만	월 94,000원	
21년이상 22년미만	월 96,000원	
22년이상 23년미만	월 97,000원	
23년이상 24년미만	월 98,000원	
24년이상 25년미만	월 99,000원	
25년이상	월 100,000원	